

교류 · 협력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(주)세인트존스호텔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 인재 양성 및 취업 활성화, 현장 실습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각 호 분야에 서로 협력한다.

1. 호텔관광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
2. 재학생(외국인 유학생 포함)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노력
3. 각 기관이 보유한 연구 및 교육 인프라에 대한 상호교류
4. 그 밖의 양 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

제3조(비밀유지)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해 취득한 상대 기관의 기밀사항을 상대 기관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② 양 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내용 중,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한다.

제4조(협약 조정) 양 기관은 신의 성실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,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협약의 해지) 양 기관은 본 협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협약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제6조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기간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7조(협약의 추가 및 변경) ① 본 협약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 협약내용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 ② 본 협약서 제2조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세부협약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이행 및 해석) 양 기관은 이 협약을 준수하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,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의 대표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8월 21일



총장 박 덕 영

St. JOHN'S
HOTEL

대표이사 김 현 성

